

#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및 보결수업 내규 개정(안)

안 건 번호	123
-----------	-----

발의년월일: 2020년 9월10일

제안자: 교장 권 의 주

담당자: 교사 천 경 숙

## 1. 제안이유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과 보결수업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하고자 상정합니다.

## 2. 관련근거

가. 관보 제19778호(2020.6.23.)-대통령령 제30791호(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3599(2020.6.23.)

다. 학교교육과-8794(2020.6.25.)

## 3. 주요내용

### 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제12조 제2항)

1) 내용: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개정이유

유치원의 수업에 관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나. 세부내용

#### 1)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정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수업운영 방법

제10조(수업일수 등) 1항의 나, 2항 및 가, 나 추가

제11조(수업운영 방법) 3항, 4항 추가

제5장 입학·전·출입·퇴학·수료·졸업

제18조(퇴학) 4항 추가

제6장 유치원 회계 및 기타의 비용

제21조(회계의 운영) 1항, 2항, 3항, 4항 추가

제8장 방과후과정 운영 추가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추가

#### 2)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보결수업 규정

6항 보결수업 순위

가- 교육과정 보결 발생 시 1순위- 시간제기간제교사→원감, 2순위- 원감→원장으로 변경

- 붙임 1.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1부.  
2.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보결수업 규정 1부. 끝.

#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2006.03.01.

개정 2017.03.31.

개정 2020.09.0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이하 “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원은 김제시 죽산면 죽산2길 13 에 둔다.

## 제 2 장 교육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 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단, 취학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며,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학년 말 방학
3. 개교기념일
4. 재량휴업일-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하여 시행
5. 임시 휴업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 명령에 따라 시행
6. 기타 임시 휴업일- 본교 휴교일 및 공문서에 의한 교사연수의 날 등.

## 제 3 장 학급 편제 및 유아 정원

제7조(학급편성)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감,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수용지표에 의하여 만3,4,5세 혼합연령반으로 운영한다.

## 제 4 장 교육 내용 및 수업일수·수업 운영 방법

제9조(교육내용) 본원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영역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한다.

제10조(수업일수 등)

1. 본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수업일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1
  - 나.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 기간 또는 휴원 기간
2.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한 후 실시하며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1조(수업운영 방법)**

1. 본원은 각 호의 수업을 운영한다.
  - 가. 교육과정- 1일 4~5시간 이내의 교육활동 운영
  - 나. 방과후과정- 돌봄 및 교육활동 운영
2.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전염병 등으로 인해 등원하지 못할 경우 원격수업도 운영방법에 포함한다.
4.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30일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전·출입·퇴학·수료·졸업**

**제12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취학 유예자 포함)

**제13조(입학결정)** 본원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아 모집시스템 방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학시기)** 3월초를 원칙으로 하되 중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수에 미달일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제15조(재입학)** 본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연도에 재원을 원할 때는 재입학 희망서를 제출한 후에 재원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전입)** 관내 및 타 지역 공립·사립유치원 재학 중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학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생활기록부 원본을 해당 유치원에서 송부 받아야 한다

**제17조(전출)** 본원에 재학 중인 유아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 유치원으로의 전학을 원할 때 유치원장은 전출을 허가하며, 생활기록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생활기록부 원본을 해당 유치원으로 송부한다.

**제18조(퇴학)**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결석이 잦은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3.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원을 원하는 경우
  - ※ 보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자퇴서를 유치원장에게 제출한다.
4. 원장은 퇴학을 명하려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부재로 인하여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19조(졸업)** 만 5세 유아 중 교육일수 3분의 2 이상 이수한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제20조(수료)**

1. 만3세, 만4세 유아 중 교육일수 3분의 2이상 이수한 유아와 취학유예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2. 만5세 유아 중 교육일수 3분의 2미만 이수한 유아에게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수료증을 수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 6 장 유치원 회계 및 기타의 비용**

**제21조(회계의 운영)**

1. 유치원 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2. 본 원은 유치원 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죽산초등학교의 학교 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4. 유치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무상교육의 범위 및 기타 비용)**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징수 할 수 있다.

## 제 7 장 시상

제23조(시상) 원장 및 담임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 8 장 방과후과정 운영

제24조(학급편제 및 정원) 본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은 당해 연도 방과후과정 참여 희망 유아 수에 따라 편성하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급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25조(교육내용) 본원의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심화 활동 및 보육활동, 특성화 활동 등으로 운영한다.

제26조(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본원의 방과후과정 교육일수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며, 1일 운영시간은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 9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제27조(목적)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보 및 공식적인 의견 교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8조(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죽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29조(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진다.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제 10 장 규칙 개정

제26조(규칙개정 절차)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교직원 협의 후 개정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본 규칙은 2020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2호)

## 재 입 학 신 청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어린이는 본원 1개년의 과정을 수료하여 다음 학년에 재입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별지 제3호)

## 자 퇴 서

성 명 :

이 름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생

위 어린이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월 일 :

주 소 :

보호자 성명 :           (인)

년   월   일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제 호

## 졸업장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생

위 어린이는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1년의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졸업증서를 줍니다.

년 월 일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직인)

(별지 제5호)

제 호

##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생

위 어린이는 본 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수료 증서를 줍니다.

년 월 일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직인)

# 보결수업 내규

제정: 2017.03.16.

개정: 2020.09.00.

##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1. 목적

보결 학급 원아들의 안정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안전생활을 도모하고 해당 원아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균형 있는 보결 수업 배정을 위하여 배당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2. 관련 근거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안내(학교교육과-3292,2015.2.23.)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 3. 방침

- 가. 보결 수업 배당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나. 담임 결원 학급의 수업에 철저를 기한다.
- 다. 교육과정 담임 및 방과후 과정 결원 시 운영한다.
- 다. 보결 수업자는 맡은 시간동안 학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4. 업무 및 책임

보결 수업자는 배정 받은 보결수업 시간(특성화시간 포함), 학급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5. 보결수업 운영 방법

- 가. 보결수업 담당자 우선순위를 내규로 정한다.
- 나. 보결 발생 사유가 있는 교사는 최소한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린다.
- 다. 보결이 발생되면 담당자는 보결 수업 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교원을 배치한 뒤 보결 수업자에게 미리 통보한다.
- 라. 보결수업 배정은 우선순위에 있는 교사를 먼저 배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다음 순위의 교원이 담당한다.

### 6. 보결수업 순위

- 가. 교육과정 담당자의 보결발생 시 1순위는 원감, 2순위는 원장이 보결한다.
- 나. 방과후과정 담당자의 보결발생시 1순위는 교육과정 담당교사, 2순위는 원감, 3순위는 원장이 보결한다.

### 7. 보결수업수당 지급:

병설유치원운영비-보결수당 10,000원 지급  
(1시간-30분기준 전교조 협약사항(교원인사과-27207.2017.12.21.))

- 이 규정은 2020. 09. 00.부터 시행한다

※ 보결수업 내규가 동일조건에서는 이강하여 운영한다.